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2135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변론 종결 2018. 10. 10.

판결 선고 2018. 10.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8. 11. 사망한 망 E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나. E는 2009. 1. 1. 그 소유의 충북 진천군 F 전 328㎡와 G 전 743㎡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별지2 기재와 같은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이후 위 F 전 328㎡는 별지1 목록 제1, 2항 부동산으로, G 전 743㎡는 같은 목록 제3, 4, 5항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부동산'라고 한다).

라. 장남인 피고 B은 E가 사망한 후 청주지방법원 2015노단288호로 유언증서검인을 청구하였고, 2015. 7. 16.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마. 한편 피고 C는 2011.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와는 배치되는 내용의 2011. 9. 28.자 증여계약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B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유효하고 그 효력이 위 증여계약서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인무효인 2011. 9.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268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망 E가 자서하고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시 망 E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효한 유언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망인은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유언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의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1. 6. 24. 선고2009다8345 판결 참조), 피고들은 유언집행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가 사망한 2014. 8.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노서영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북 진천군 천 296㎡
2. 충북 진천군 대 32㎡
3. 충북 진천군 대 348㎡
4. 충북 진천군 천 98㎡
5. 충북 진천군 전 297㎡ 이상-

유언서	
유언자 본인	(이하 본인이라 함)는 대한민국
총칭복도, 직권은	여 거주하는 자
로서 다음과 같이 유언 한다 이 유언 관련 또는 이후에 본인의	
행한 모든 유언 및 그에 대한 변경이 본 유언서의 내용에 상충될	
경우에는 본 유언서의 내용이 모두 우선한다	
제 1조: (직권관계)	
① 본인의 배우자는	이하 본인은
와 본인에게 유언한 사	
상이 없다	
② 본인의	사이에는 4명의 자택이 있고 고령으로 이력자
있다	
장남:	
차남:	
삼남:	
딸:	
제 2조: (상속재산)	
① 본인의 소유 토지 건물 양조장 수유권 및 전출 시설 기계	
기주 영업권 등을 다음과 같이 자매들에게 상속한다	
② 전가주지	와
소유할 전출은 상속	
에게 상속하니 주자로 관리하여	
후손(상손)들이 계속 승계 관리 해 나가기 바란다	
③ 양조장 소지	와
전출 시설 영업권 및 기계	
와 양조장	와
소지는 장남	

차남 [] 공동(50%)소유 재산으로 상속한다
유형 처분 기타 소유 재산과의 일치는 서로 협의 하에
절정 하되 장남 [] 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유화 하여 삼자(형제)간에 아등 없이 순자산
대에 까지 재산이 유지 되도록 합의 하려나

④ 장남 []에게는 양조장 설립 기여지분을 창작성
하여야 하나 생활이 윤택 하여 먹고살 만 하니
[] 와 [] 두지 만을 상속 하니 양조장 기여
지분을 둘 때 [] 의 형편을 고려 하여 기여지분을
양도 해 준 것으로 이해 하여 주기 바란 다

⑤ 딸 []에게는 [] 두지 만을 상속 한다

~~2000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수호인

2005. 7. 16
법원장